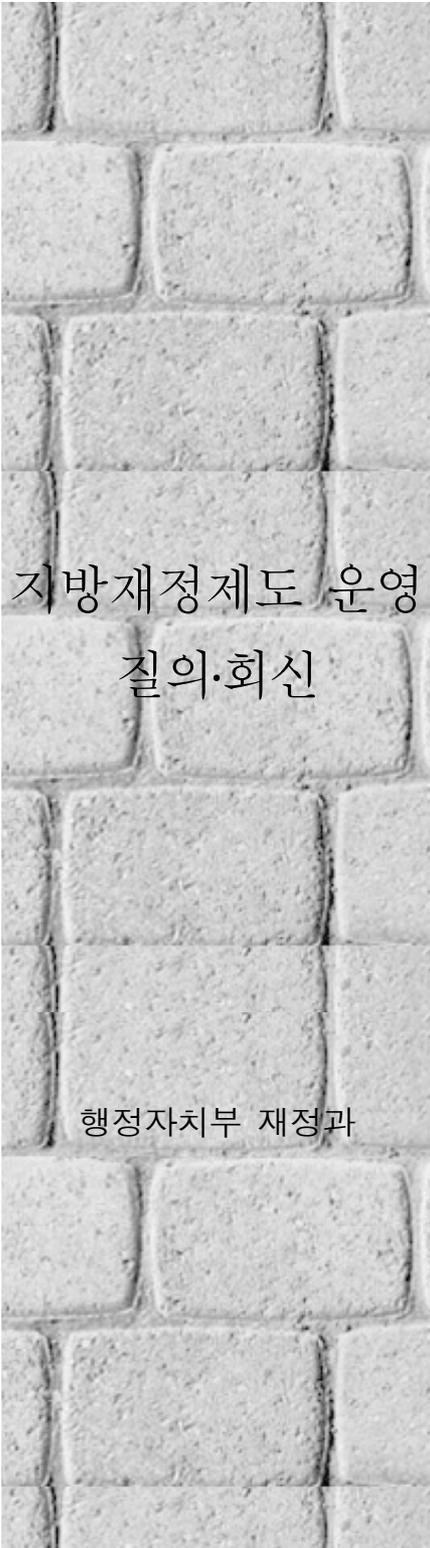


◆ 질의와 회신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공동도급 입찰참가 신청 후 사정에 의한 단독입찰참가 가능 여부

【질 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분담이행방식)도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공동도급구성업체가 내부적 사정에 의거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잔존구성원인 대표업체가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면 단독으로 사업수행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이 내부사정 등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임.

2. 공동수급체의 중복적 결성 가능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의 공동수급체 신인도 평가에 있어
 -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상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적격심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인도 가점 인정가능 여부
 - 당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또 다른 당해 입찰 참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4항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공동도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시를 하지 않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적격심사시 제출한 경우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신인도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가지급 방법

【질 의】

-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분담이행방식(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구분)으로 도급하여 계약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 전부를 공사대가로 기 수령하여 실제계약상 설계용역비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차후 시공하는 공사대가 청구시 설계사를 제외한 시공사만의 인감날인으로 공사대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일부 관행상 시공사에서 설계사를 미리 선정하여 낙찰전 설계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청구하는 기성청구서류에 설계사를 제외한 시공사만의 인감날인으로 공사대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은 모두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구성원의 연명으로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4. 공동도급공사의 기성대가 지급방법

【질의】

- ① 공동도급계약을 5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일부공정이 100%완료되었으나 전체 공정이 64%인 경우 그 완료된 공정의 90%에 해당하는 기성금 이상은 지급이 불가한지 여부
- ② 발주처로부터 공동도급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대표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잔여구성원의 지급의무 및 잔여기성금에서 직접 수령 가능여부

회신

-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의 지급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대가지급은 구성원별로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여 구성원별로 지급하는 것임.
- (질의②에 대하여)
-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간의 대금청구 등 채권·채무관계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민사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공사를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분리시공이 가능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며, 계약이행 내용(내역)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

며 대가지급은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 받으며, 분리시공에 대한 하자책임은 어떻게 되며 하자보증서는 분리시공분으로 제출하는지, 책임감리대상 공사라면 감리단의 보고와 승인 득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발주관서의 승인은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분리시공하지 않고 공동시공 하였을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정사항이며
- 실적인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별표 1>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되 다만, 당해회사가 시공한 부분이 명확히 인정되어 실적증명서에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6.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의 적용범위

【질 의】

-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②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제2조제2항의 “당해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100분의40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공사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 등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③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시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당해지역 대기업체도 반드시 당해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 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도 적용되며, 동 예규에서 정한 지역업체의 100분의 40이상 의무참여비율은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중소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중소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물품구매나 제조입찰이외의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7. 용역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질 의】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역인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역입찰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지역업체와 상호보완적으로 참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도내 중소기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공사이외에 물품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할 수 없음
-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입찰참가업체가 지역업체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음.

8.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의한 계약의 가능 여부 및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의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을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고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지역업체라 함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자)를 의미함.

9.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계약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질 의】

- ① 공동이행방식 계약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업체(소각분야)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잔존구성원(토목분야)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 ②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 포기서를 제출시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 업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③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의 귀속여부와 연대보증사 보증시공 포기서 제출시 연대보증사의 재정적 책임여부는

회 신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계약 불이행 등)를 직접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현장상태, 성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할 때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10.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가능여부 등

【질 의】

- ① A회사(실적 보유업체)와 B회사(실적 미보유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시공하여 오던 중 A회사가 파산결정 되었을 경우 B회사가 단독으로 나머지 공사(1,2차 계약분 진행 중, 3차 미체결)를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A회사가 파산결정으로 인해 B회사에게 공사의 일체를 위임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잔존구성원인 B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③ A회사가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공동도급자인 B회사 등이 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시행할 경우 선금에 대해 B회사 등이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선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② 구성원이 부도로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전부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 구성원의 계약불이행은 공동수급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공동수급체의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켜서는 아니됨.
- ③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것임.

11.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가능 여부

【질 의】

① 실적보유 업체이며 대표사인 A사가 경영상태악화와 투입인원 부족 등 원활한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도급사이며 면허보유업체인 B사와 합의하에 지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②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 바에서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비율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이란 파산, 해산, 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함.

1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 계약이행 방법

【질 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잔존구성원의 당해계약 이행요건은 입찰공고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이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당해계약을 이행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예규·훈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국가기관에 적용하는 예규 등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
-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이행요건이라 함은 단순히 입찰공고시 제한한 실적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구성원의 면허요건, 시공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13.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출자비율 변경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도 등의 업체를 제외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인지 아니면 승계계약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수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발주처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재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